서울과학기술대학교규정 제631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

제정 1994. 12. 21. 개정 2001. 12. 1. 개정 2004. 12. 24. 개정 2005. 10. 1. 개정 2008. 11. 20. 개정 2010. 08. 3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연구 제반분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11.20., 2010.8.30>
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처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중장기연구사업, 학교 대응투자 지원사업 등 주요사안 심의에는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국장, 공동실험실습관장, 사업단장(연구책임자) 등을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1.20.>

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08.11.20.>

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술연구의 종합 계획 수립

- 2. 연구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3. 연구비 및 간접경비의 관리 운영 <개정 2008.11.20.>
- 4. 부설 연구소의 설립, 지원, 통·폐합
- 5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- 6. 중장기연구사업 및 학교 대응투자 지원사업 등의 사업계획, 대응자금 규모, 세 부사업, 연구진 구성, 관련 장비 선정·취득, 진행상황 등
- 7. 기타 연구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제5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
제6조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술분과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. 12. 01.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0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8.11.20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631호, 2010.8.30.>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)